

## 1 국가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개요

### 1.1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개요

#### 요약/인용

그리스의 노동관계 기본 원칙은 민법 제 662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및 사업장 그리고 관련 숙소, 시설, 기계, 도구와 관련된 문제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제,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의 산업안전보건 기본법은 일련의 법률과 EC 지침을 거쳐 제정된 법률 제 3850/2010호이다. 동 법은 작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통합단체협약, 그리스 대법원인 아레이오스 파고스(Areios Pagos)의 판례 등이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 법원(法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구(IKA)나 노동감독청에서도 여름철 작업과 같은 극단적인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규의 역할을 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있다.

#### 비고/의견

그리스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제외한) 기존의 판례가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그리스 법원은 유사한 사건의 과거 판례에 기속되지 않는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예외

### 2.2 근로자의 정의

#### 요약/인용

근로자란 노동 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술, 업무의 종류, 종사하는 경제 분야에 따라 분류되며, 각 분야 별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 2.2.1 특수 근로자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는 군대를 포함한 모든 민간/공공 부문에 적용된다. 단, 가사 근로자는 동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ILO 협약 제 134호를 비준한 법률 제 386/1976호에 따라 해양 운송 분야에는 별도의 조항이 적용되며, 광산 및 채석장에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 2.2.1.1 이주 근로자

#### 요약/인용

법률 제 4251/2014호 7조에 따라 근로 허가를 취득하고 일을 하는 이주 근로자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법률 제 3850/2010호 3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2.1.2 가사 근로자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2조에 따라 가사 근로자는 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2.1.3 재택 근로자

##### 비고/의견

재택 근로자는 법률 제 3850/2010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재택근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 2639/1998호 1조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 계약이 재택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 근로자도 일반적인 의미의 근로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위반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집에 대한 감독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2.1.4 자영업자

##### 요약/인용

자영업자는 법률 제 3850/2010호 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3 사용자의 정의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3조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있고 기업 또는 사업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4 제외되는 산업 분야

##### 2.4.1 농업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1조에 따라, 동법은 민간/공공 부문의 모든 기업, 사업체, 사업 활동에 적용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4.2 건설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1조에 따라, 동법은 민간/공공 부문의 모든 기업, 사업체, 사업 활동에 적용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4.3 서비스업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1조에 따라, 동법은 민간/공공 부문의 모든 기업, 사업체, 사업 활동에 적용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4.4 공공부문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2조 1단에 따라, 동법은 공공 부문과 군대(2단)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2.4.5 기타

##### 요약/인용

해양 운송업 근로자는 대통령령(P.D.) 187/1973의 적용을 받는다.

광산 및 채석장 근로자는 광산 및 채석장 근무에 관한 부령 17492/12/12 1984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광산 및 채석장 근무에 관한 부령

공공해양법에 관한 이행 지침 제 187호

#### 2.5 업무상 사고의 정의

##### 요약/인용

구속법(Mandatory Law) 제 1846/1951호 60조 3단에 따르면, 업무 상 사고란 근무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그 밖에도 사회보장기구 시행규칙 제 45/24.6.2010호는 업무 상 사고를 작업 중 또는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 또는 근무 능력 상실이 초래된 심각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 관련성과 인과 관계가 확실한 경우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초래한 사건도 업무 상 사고에 포함된다.

참고

업무상 사고에 관한 사회보장기구 시행규칙 제 45/24.6.2010호

사회보장에 관한 구속법 제 1846/1951호

#### 2.6 업무상 질병의 정의

##### 요약/인용

부령 132/12.2.1979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근무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률로 정한 모든 질병 또는 급성/만성 중독으로 정의하고 있다.

##### 비고/의견

그리스 대법원 판례 AP(Areios Pagos) 944/2001에 따르면, 근무 중 또는 근무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로 능력을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상실하게 한 질병, 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신체적 특성과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업무의 성격 및 유형, 근로와 관련된 유해한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진적인 근로자의 건강 저하도 업무 상 사고로 간주된다.

#### 참고

지속적인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업무 상 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944/2001

사회보장기구(IKA) 질병 규칙 40조를 개정하는 부령 132/12.2.1979

#### 2.6.1 업무상 질병 목록

##### 요약/인용

유럽 업무상질병 목록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 2003/09/19에 따라, 대통령령 41/2012로 국가 업무상 질병 목록이 작성되었다.

#### 참고

대통령령 41/2012 국가 업무상 질병 목록

### 3 산업안전보건 행정 및 집행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 3.1 산업안전보건 관할 정부 기관

##### 요약/인용

대통령령 113/2014 15조에 따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이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국가 주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

노동사회보장복지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113/2014

##### 3.1.1 목적, 역할, 기능

##### 3.1.2 책임자 및 조직 구성

#####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국은 (a) 근로조건과, (b) 유해요소방지인간공학보건증진과, (c) 정보자료과, (d) 산업사고과, (e) 산업안전보건훈련감독과, (f) 산업사고피해자권리보호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장은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 참고

노동사회보장복지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113/2014

#### 3.2 국가 산업안전보건 연구 프로그램 또는 기관

##### 요약/인용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0년 국가통합단체협약 5조에 따라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ELINYAE)”이라는 이름의 국가 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참고

국가통합단체협약 1990-1991

### 3.2.1 목적, 역할, 기능

#### 요약/인용

기관 내규에 따른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ELINYAE)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유해 물질 또는 작업 환경 및 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 기록, 처리, 분석, 연구
- (b) 관련 규정, 규칙, 법률의 해석
- (c) 해외 관련 사례 및 자료 연구, 전파
- (d) 산업안전보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 및 훈련 제공
- (e) 사업장과 그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 일상생활 및 근로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처리 지원
- (f) 신기술 도입이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산업 위험 요소 예방에 관한 연구
- (g)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 지식 제공

## 참고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ELINYAE) 내규

### 3.2.2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책임자

#### 요약/인용

기관 내규에 따라 운영 위원회는 그리스 국가 노동 연맹(GSEE-근로자), 그리스기업연합(SEV-사용자), 그리스 전문가 협회, 상공업협회(GSEVEE-사용자), 그리스상업연맹(ESEE-사용자)을 대표하는 8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 참고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ELINYAE) 내규

### 3.2.3 예산

#### 요약/인용

기관 내규에 따른 예산원은 다음과 같다:

- (a) 직업 훈련을 위한 사용자 기여금(0.25%)의 20%
- (b) 기관 구성원들이 합의한 기금
- (c) EU 지원금
- (d) 전문 서비스 제공 수수료
- (e) 기부금, 출판물 수익 등
- (f) 기관 자산 수익금
- (g) 민간/공공, 국내/해외 기업의 기여금
- (h) 기관 구성원들의 기여금
- (i) 운영 위원회가 수락한 그 밖의 기여금

## 참고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ELINYAE) 내규

## 3.3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 요약/인용

대통령령 제 113/2014호 1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국은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기본틀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을 평가한다.

## 비고/의견

2010년에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기본 전략이 비공식적으로나마 제안되었지만, 실제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 참고

노동사회보장복지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113/2014

### 3.3.1 국가 산업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 4 근로자 및 근로자 외의 사람을 보호할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 4.1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할 의무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a) 산업 위험 요소 예방, 정보 제공 및 훈련 실시, 필요한 조직 구축 및 조치 시행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작업 조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전문가 및 노동보건 감독관의 조언을 수용하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d)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 (e) 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f) 예방 조치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g)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 (h) 근로자와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장려 및 촉진해야 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용자는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a) 업무 장비의 선택, 화학적/생물학적 요인, 생산 제품, 사업장의 배치, 제조 공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 보건 위험 요소를 파악 및 평가해야 한다.
- (b) 업무 배정 시 파악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c) 신기술 도입 여부 및 도입 일정을 결정할 때는 신기술 도입이 장비 선택, 근로 조건, 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근로자 및 그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d) 위험성이 높거나 특정한 유형의 위험성이 있는 구역에는 충분한 교육과 주의를 받은 근로자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 위생 대책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4.2 근로자 외의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2조 1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기업 또는 사업체의 구역 안에 들어온 모든 제3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4.3 사업장을 공유하는 둘 이상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는 복수의 기업들이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의 사용자들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 위험 요소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함께 조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4.4 근로자의 업무 관련 건강 검진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3조 5단에 따르면 사용자는 건강 검진 프로그램에 규정된 기본틀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4.4.1 감시가 필요한 특정 위험 요소

##### 요약/인용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은 대통령령 41/2012 국가 업무상 질병 목록에 나열되어 있다.

참고

대통령령 41/2012 국가 업무상 질병 목록

#### 4.5 근로 환경 및 근로 방식에 대한 감시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38조 3단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유해 물질의 농도, 근로자 노출 수준 모니터링,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 결과 분석, (b) 근로자 안전 보건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c) 응급 상황 대처 방안 수립, (d) 안전보건 관련 안내 표지 설치 및 경보 체계 구축, (e) 위험 요소에 노출된 근로자 명단 작성 및 최신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 기록 유지

##### 비고/의견

그리스 개인정보보호청 규칙 1/2011에 따라 산업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근로자 모니터링과 관련된 그 밖의 일반적인 사안은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472/1997호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4.6 개인 보호 장비 제공 의무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38조 2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을 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4.7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을 보장할 의무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9조 2단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보호장비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할 의무를 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4.8 응급 처치 및 복지 시설 제공 의무

##### 4.8.1 응급 처치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3조 5단에 따라 사용자는 응급 처치, 화재 안전, 사업장 대피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4.8.2 위생 시설

##### 요약/인용

대통령령 16/1996 첨부 1에 따라 위생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사업장 안전보건 최소 요구조건에 관한 대통령령 제 16호(1996년 1월 18일)

##### 4.8.3 음용수

##### 요약/인용

대통령령 17/1996 첨부 1에 따라 위생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 제 17호(1996년 1월 18일)

##### 4.8.4 휴식 및 식사 공간

##### 요약/인용

대통령령 16/1996에 따라 휴식 및 식사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사업장 안전보건 최소 요구조건에 관한 대통령령 제 16호(1996년 1월 18일)

## 5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원칙 및 관행에 따른 사용자의 예방 조치 수립 의무

### 5.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성 요소

5.1.1 보건 안전 관련 책임 및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책 또는 계획

5.1.2 안전 보건 담당자 임명

### 5.1.3 서면 위험 평가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3조 5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한 서면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 평가 실시 주체는 산업 전문의, 안전 전문가 또는 외부 안전보건 전문 기관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중에서 응급처치, 화재 안전, 사업장 대피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5.1.4 안전한 근로 체계 및 절차

#### 요약/인용

사용자는 가능한 한 근로자의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진다.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출 수준은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5.1.5 위험성에 대한 훈련 및 정보

#### 요약/인용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 교육/훈련을 장려하고 촉진할 의무가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5.1.7 보건 안전 문제에 관한 근로자와의 협의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안전보건 관련 문제, 새로운 장비 또는 기술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5.2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 또는 기준을 시행할 의무

## 6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지원을 확보할 사용자의 의무

### 6.1 산업안전보건 전문 기관

#### 6.1.1 보건 및 안전 전문가의 조언 및 지원 확보

#### 요약/인용

50인 이상 기업의 사용자는 산업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또는 2009/05/15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임명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의 사용자는 안전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사용자는 법률 제 3850/2010호 23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외부 안전보건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비고/의견

특정 유형(B, C형)의 50인 미만 사업장, C 유형의 6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률 제 3850/2010호 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용자가 직접 안전 담당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6.1.1.1 전문가 또는 전문 서비스 자격 요건

##### 요약/인용

산업보건직의 지역 의사 자격과 법률 제 3850/2010호 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안전 담당자는 법률 제 3850/2010호 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외부 안전보건 전문 업체는 법률 제 3850/2010호 2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6.2 산업안전보건 실무자 임명

### 6.2.1 산업안전보건 실무자 임명 필요한 사업장 규모 기준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8조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체 사용자는 안전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50인 이상 사업체 사용자는 산업보건직을 임명해야 한다.

##### 비고/의견

산업보건직의 또는 안전 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한 독립 시설, 부서, 모회사에 소속된 자회사의 경우 이 기준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7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 7.1 자신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9조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기계, 장비, 도구, 위험 물질, 운송 수단 기타 업무 수단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 가용한 개인보호장비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원래 자리에 보관해야 한다.
- 기계, 도구, 장비, 시설, 건물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위치를 옮겨서는 안 되며, 모든 안전장치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 안전 보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안전 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 및/또는 안전담당자, 산업보건직에게 보고해야 한다.
- 관계 노동 감독 기관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 안전담당자, 산업보건직에게 부과한 의무 및 요구조건을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f) 사용자, 안전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한 업무 조건 및 환경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7.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9조 1단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 및 자신의 근무에 영향을 받는 제 3자의 안전/보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7.3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관리자의 의무

7.4 다른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고위 간부의 의무

7.5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자영업자의 의무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2조 1단에 따른 의무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7.6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9조 1단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시에 따른 의무를 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7.7 위험성 및 예방 조치에 대해 문의할 권리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5조 1단에 따라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련 예방 조치에 대해 질의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7.8 위험한 상황을 피할 권리

**인용/요약**

법률 제 3850/2010호 45조에 따라 사용자는 압박하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 또는 지역에서 이탈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7.9 위험하지 않은 일로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

7.9.1 위험하지 않은 일로 재배치되지 않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 사직할 권리

## 8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협조, 협력

8.1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협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

8.1.1 목적, 역할, 기능

### 요약/인용

법률 제 1568/1985호 15조에 따라 노동부 산하 최고노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현행 법률 또는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제 1568/1985호

8.1.2 구성 및 의장

### 요약/인용

법률 제 1568/1985호 1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참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제 1568/1985호

8.3 보건 안전 담당 근로자 대표자를 선정할 근로자의 권리

8.3.1 보건, 안전 근로자 대표가 필요한 인력 규모 기준

### 요약/인용

법률 제 1568/1985호 1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노동부 사무총장(위원장)
- (b) 노동부 기술 또는 보건 담당자
- (c) 경제개발관광부 대표자 1인
- (d) 보건부 대표자 1인
- (e) 가장 대표성이 높은 3차 노동조합의 대표자 3인
- (f) 사용자 단체 대표자 3인
- (g) 그리스 기술협회 대표자 1인
- (h) 그리스의료협회 대표자 1인
- (i) 그리스화학협회 대표자 1인
- (j) 기술안전 전문가 1인
- (k) 보건안전 전문가 1인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8.3.2 보건 안전 근로자 대표의 자격 조건

8.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역할, 권리, 권한

- 8.4.1 사업장 조사권
- 8.4.2 산업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5조 1단에 따라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 정보, 위험 평가 및 예방 대책, 위험 물질/자재/기계, 사용자의 안전 대책 관련 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4.3 인터뷰 참관권
- 8.4.4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대표는 법률 제 3850/2010호 22조 1단에 따른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4.5 조사관과 동행할 권리
- 8.4.6 시설물 사용권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2조 4단에 따라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대표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4.7 안전보건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급 근무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2조 4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대표는 안전담당자 근무 시간의 3분의 1을 하회하지 않는 시간 동안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급 근무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4.8 시정 통지권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대표는 활동 과정에서 파악한 위험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예방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4.9 사용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5조 2단에 따라 사용자는 위험 평가, 산업안전보건 예방 대책의 파악/기획/시행/검증 시 사전에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4.10 위험한 업무의 중단을 지시할 권리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6조 5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노동감독기관에 알릴 수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5 사외 근로자 대표의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문제 개입권

###### 8.5.1 사업장 출입권

###### 8.5.2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한 조사권

###### 8.5.3 근로자와 협의할 권리

###### 8.5.4 근로자에게 조언할 권리

###### 8.5.5 강제 조치 개시권

##### 8.6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8.6.1 근로자 대표의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28조 1단에 따라 노동부 산하 노동감독청은 모든 시 또는 지역에 지역합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법률 제 3850/2010호 A장의 규정에 따른 사업체 규모 기준에 미달된 중소기업들을 관리한다.

피레아스, 드라페트소나, 케라티시니, 페라마, 살라미나(선박 수리 지역) 지역에 지역합동산업안전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다.

#### 비고/의견

법률 제 3850/2010호 A장의 규정에 따른 사업체 규모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들은 주로 조선업 또는 건설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특정 작업에 주력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실제로 합동위원회가 설립된 사례는 아직 선박 수리 분야뿐이며, 현행법은 지역 별 합동위원회 설립만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6.2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립 조건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28조 4단은 지역합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역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노동부 부령으로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8.6.3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목적, 역할, 기능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28조 3단은 합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 역할, 기능은 노동부 부령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령은 선박건조 분야의 기업 등록 확인, 등록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표본 조사, 기준에 미달되거나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부, 노동부, 해양도서정책부 부령 3232/41/1989 5조를 참고하라.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8.6.4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업무의 기록

8.6.5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 공유

8.7 합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무적 훈련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22조 1단에 따라 근로자(및 합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는 관계 부서, 교육 기관, 기타 공공 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8.8 보복으로부터 보호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9조는 근로자 대표를 노조법 제 1264/1982호에 따른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의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8.9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및 의무 이행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의 면제

## 9 구체적인 위험 요소 또는 위험

9.1 생물학적 위험 요소

### 요약/인용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노출과 관련한 근로자 보호에 관한 EU 지침 90/679/EEC를 개정한 EU 지침 93/88/EEC는 대통령령 15/1999를 통해 그리스 국내법으로 수용되었다.

### 참고

대통령령 제 186/95호를 개정하는 대통령령 제 15호(1999/01/22)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노출과 관련한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 186호(1995/05/23)

9.2 화학적 위험 요소

9.2.1 취급, 보관, 라벨링, 사용

참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건강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 제307호(1986/08/26)를 개정하는 대통령령 제 162호 (2007)

9.2.2 화학물질 제조, 공급, 수입자의 사용자 안전, 보건 보호 의무

**요약/인용**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사용할 목적의 위험 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관할 기관에 그 성분을 포함한 해당 제품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험 물질 또는 혼합물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및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의 라벨을 부착/관리해야 한다. 사용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된 해당 물질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건강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 제307호(1986/08/26)를 개정하는 대통령령 제 162호 (2007)

9.2.3 살충제

참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제 1568/1985호

9.3 인간공학 관련 위험 요소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9.4 물리적 위험 요소

9.4.1 이온화 방사선

참고

위험으로부터 대중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안전 기준에 관한 부령 제 A2 ST/1539호

9.4.2 진동 및 소음

**요약/인용**

대통령령 85/1991 3조에 사업장 소음 측정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 제 85호

9.4.3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

**요약/인용**

대통령령 395/1994 2조를 개정하는 대통령령 155/2004를 통해 EU 지침 89/655/EEC의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 작업에 관한 규정을 그리스 국내법으로 수용했다.

참고

EU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최소 안전 요구조건에 관한 대통령령 155/2005를 개정하는 대통령령 155/2004

9.4.4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

**요약/인용**

시행규칙 130297/15.7.1996 첨부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이란 대통령령 17/1996 17조에 따른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근로 환경을 의미한다.

## 참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 제 17호(1996/01/18)

대통령령 17/1996 시행을 위한 노동부 규칙 130297/15.7.1996

## 9.4.5 사업장 시설물 유지 관리 부족으로 인한 위험

**요약/인용**

법률 제 1568/1985호 19조 1단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 시설의 사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를 진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제 1568/1985호

## 9.4.6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

**요약/인용**

법률 제 1568/1985호 21조 2단에 따라 사업장 및 그 부속 공간의 온도를 업무의 강도 및 성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제 1568/1985호

## 9.4.7 화재 위험

**요약/인용**

대통령령 42/2003 3조에 따라 화재 및 폭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참고

보건 및 안전 개선을 위한 최고 요구조건에 관한 대통령령 제 42호(2003/02/17)

## 9.4.8 흡연

**요약/인용**

법률 제 3730/2008호 3조에 따라 실내 또는 지붕이 있는 모든 민간/공공 기업/사업체/기관 내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단, 흡연 공간을 지정된 곳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

미성년자의 흡연 및 음주 금지에 관한 규칙

## 9.4.9 석면

**요약/인용**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 175/1997호 12조는 주간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석면 노출 기준치를 0.60개/cc로 규정하고 있다. 동 대통령령 8조에는 (a)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비 지급, (b) 경고판 부착, (c) 작업의 성격, 기간, 장소, (d) 작업 방법 등과 관련한 예방 조치를 규정하는 사용자의 작업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참고

석면 노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 70a/88을 개정하는 대통령령 175/1997(1997/07/02)

9.4.10 나노 기술 관련 위험

9.4.11 사업장 내 HIV 감염

#### 요약/인용

보건부 시행규칙 ?1/3239.4.7.2000은 HIV 환자 및 의료진에 관한 기본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HIV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의료진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 참고

보건부 시행규칙 ?1/3239.4.7.2000

9.5 심리사회학적 위험 요소

9.5.1 심리사회학적 위험

#### 요약/인용

국가통합단체협약 2008-2009 7조는 근로 요구 조건 또는 사용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또는 장애를 업무 상 스트레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NGCA도 업무 상 스트레스에 관한 기본 협약을 제공하고 있다.

#### 참고

국가통합단체협약

9.5.2 직장 내 폭력

#### 요약/인용

헌법 5조, 민법 57조는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료 또는 제3자도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그리스 헌법(2008년 개정)

그리스 민법

9.6 기타 위험 물질

#### 요약/인용

합동 부령 16289/230/1999는 가스탱크에 대한 CE 마크 부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9.7 기계

### 9.7.1 기계 및 도구 관련 위험

#### 요약/인용

대통령령 395/1994 2조는 다양한 기계, 도구, 작업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참고

근로자 안전 보건 최소 요구조건에 관한 대통령령 395(1994/12/17)

### 9.7.2 기계 설계 및 제조업체의 기계 운용자 안전 및 보건 보호 의무

#### 요약/인용

법률 제 1568/1985호 22조에 따라 설계자 및/또는 제조업자는 자신이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기계, 도구, 장비에 산업안전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진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제 1568/1985호

### 9.7.3 기계 설계, 제조, 수입, 공급자의 기계 정보 제공 의무

#### 요약/인용

법률 제 1568/1985호 22조 2단에 따라 기계를 설계, 제조, 수입, 공급하는 자는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제 1568/1985호

### 9.7.4 승인/인증을 받은 공급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할 의무

#### 요약/인용

취득 대상 기계 또는 장비는 반드시 대통령령 395/1994 첨부 9에 규정된 최소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참고

근로자 안전 보건 최소 요구조건에 관한 대통령령 395(1994/12/17)

### 9.7.5 기계 및 장비 유지 관리

#### 요약/인용

기계의 유지관리(해당되는 경우 유지관리 자료의 최신화 포함)는 대통령령 395/1994를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참고

근로자 안전 보건 최소 요구조건에 관한 대통령령 395(1994/12/17)

### 9.7.5.1 적용 대상 장비 목록

## 9.8 취약한 근로자 보호 규정

### 9.8.1 임산부 보호

#### 요약/인용

사용자는 의학적으로 임신이 확인된 근로자, 출산한 근로자 또는 모유 수유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 41/2003 2조 4단에 의해 개정된 대통령령 176/1997 11조 1단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는 업무로 전환시킬 의무를 진다.

어머니인 근로자는 총 17주간의 출산 휴가를 보장 받는다. 출산 휴가 기간은 대통령령 41/2003 2조 3단에 의해 개정된 대통령령 176/1997 8조 및 국가통합단체협약 2000-2001에 따라 출산예정일 이전 8주, 출산 후 9주간 사용할 수 있다.

동 규정은 군대에 고용된 근로자 및 가사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대통령령 41/2003 2조).

#### 참고

임산부 산업안전보건 개선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 176(1997)을 개정하는 대통령령 41호(2003/02/17)

임산부 산업안전보건 개선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 176(1997/07/02)

국가통합단체협약(2000-2001)

#### 9.8.2 수유 중인 여성 보호

##### 요약/인용

사용자는 의학적으로 임신이 확인된 근로자, 출산한 근로자 또는 모유 수유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 41/2003 2조 4단에 의해 개정된 대통령령 176/1997 11조 1단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는 업무로 전환시킬 의무를 진다.

어머니인 근로자는 총 17주간의 출산 휴가를 보장 받는다. 출산 휴가 기간은 대통령령 41/2003 2조 3단에 의해 개정된 대통령령 176/1997 8조 및 국가통합단체협약 2000-2001에 따라 출산예정일 이전 8주, 출산 후 9주간 사용할 수 있다.

동 규정은 군대에 고용된 근로자 및 가사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대통령령 41/2003 2조).

#### 참고

임산부 산업안전보건 개선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 176(1997)을 개정하는 대통령령 41호(2003/02/17)

임산부 산업안전보건 개선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 176(1997/07/02)

국가통합단체협약(2000-2001)

#### 9.8.3 특정 직업, 업무에 대한 여성 근로자 배정 제한

#### 9.8.4 특정 직업, 업무에 대한 특정 연령 근로자 배정 제한

##### 요약/인용

18세 미만의 자는 건강, 안전, 도덕에 유해하거나 능력을 넘어서는 종류의 업무에 고용될 수 없다. 해당 업무는 대통령령 62/1998 첨부 1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 제 3850/2010에 따라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12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일간 근무 시간은 6시간, 주간 근무 시간은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청소년 노동 보호에 관한 EU 지침 94/33/10에 따른 대통령령 62(1998/03/17)

## 10 사고/질병에 대한 기록, 통지, 조사

### 10.1 업무상 사고, 준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록 및/또는 원인 조사 의무

#### 10.1.1 업무상 사고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14,17조에 따라 노동감독청의 감사를 거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동법 43조 2단의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 상 사고 및 사고 예방 조치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 또한 3일 이상의 근로 능력 상실을 초래한 모든 업무 상 사고의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0.1.2 준사고

#### 10.1.3 업무상 질병

##### 요약/인용

산업보건법은 법률 제 3850/2010호 18조에 따른 유해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건 파일 및 건강 검진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법 14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건 관련 조언 내역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0.2 사용자의 업무 상 사망, 부상, 질병을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보고할 의무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43조 2단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할 노동감독청, 가까운 경찰서, 근로자의 보험사에 24시간 이내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1심 법원에 사실 진술 서약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사고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 집행

### 11.1 산업안전보건 조사관 임명

##### 요약/인용

법률 제 3996/2011호 2조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노동법, 관련 법령, 협정, 단체협약 규정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의료노동감독관은 노동감독관과 협조하여, 특히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중심으로 보건 관련 법령의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 참고

노동감독 및 사회보장 법령 개혁에 관한 법률 제 3996/2011호

### 11.2 산업안전보건 조사관의 권한

### 11.2.1 사업장 출입권

#### 요약/인용

법률 제 3996/2011호 2조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 참고

노동감독 및 사회보장 법령 개혁에 관한 법률 제 3996/2011호

### 11.2.2 조사, 시험, 질의권

#### 요약/인용

법률 제 3996/2011호 2조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 참고

노동감독 및 사회보장 법령 개혁에 관한 법률 제 3996/2011호

### 11.2.3 조사권

#### 요약/인용

법률 제 3996/2011호 2조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모든 업무 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 참고

노동감독 및 사회보장 법령 개혁에 관한 법률 제 3996/2011호

### 11.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언을 할 의무

## 11.3 산업안전보건 조사관의 강제 집행 권한

### 11.3.1 명령권 또는 통지권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1조 4단에 따라 사용자는 명령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사실을 시정해야 한다. 이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3.2 과태료 부과권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1조에 따라 산업위험예방 또는 노동감독 관련 관할 기관은 사용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법령 위반에 대해 500~50,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3.3 인허가 취소 또는 중지 권한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1조 1단에 따라 노동 감독관(최대 6일 이내) 또는 노동부 장관은(6일 초과). 위험의 정도, 지속성, 과거 위반 이력 등을 감안하여 법령 위반 사업장 활동의 전체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3.4 위험한 업무를 중단시킬 권한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1조 1단에 따라 노동감독관 또는 산업위험예방청의 장은 위험한 업무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3.5 고발 개시 권한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1조 1단에 따라 산업위험예방청의 장 또는 노동 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3.6 고발 시행 권한

#### 11.3.7 그 밖의 강제 권한

### 11.4 법원의 제재

#### 11.4.1 법인에 대한 벌금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1조에 따라 산업위험예방청 또는 노동감독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4.2 자연인에 대한 벌금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1조 1단에 따라 사용자,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에게 각 위반 행위 별로 500~5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4.3 벌금 외의 제재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1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법령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기능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4.4 형사적 책임

##### 요약/인용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 생산자, 수입자의 형사적 책임은 법률 제 3850/2010호 67조에 따른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

#### 11.4.5 징역 기간

##### 요약/인용

법률 제 3850/2010호 72조 1단에 따라 사용자는 6개월 이상, 제조자, 공급자, 수입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

법률 제 3850/2010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비준